

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

(의안번호 제282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08. 27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4. 08. 27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4. 09. 10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재무과장 이현주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하여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결을 받아 202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출연 이유

-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 및 지방세법 개정 관련 연구,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, 불복소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임.
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2/10,000을 출연.

2) 출연 내역

- 출연대상기관: 한국지방세연구원
- 출연시기: 2025. 3. 31.까지
- 2025년도 출연금액: 5,906천 원
 - ※ 산출내역: 49,216,680천 원 × 1.2/10,000 = 5,906천 원
- 2024년도 출연금액: 6,022천 원(산출비율 1.2/10,000)

3) 기대효과

-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- 지방세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및 지방세정 발전

4)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
 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제18조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- 합의: 해당사항 없음
- 기타
 - 입법예고: 해당사항 없음
 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혜정)
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 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함.
- 한국지방세연구원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,
- 2025년도 출연금액 5,906천 원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제1항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(2023년)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2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적정함.
-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, 한국지방세연구원에 5,906천 원을 출연하는 것은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